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4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25일

발 의 자: 박성연, 김영철, 김용호,
김재진, 김형재, 남궁역,
남창진, 박영한, 서상열,
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
윤영희, 이은림, 이종태,
임춘대, 최민규, 최윤희,
최호정, 홍국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,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(제29조제1항제6호다목 및 라목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6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.

라. 원인자부담금은 현금,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·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9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.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나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 <p>라. <u>원인자부담금은 현금, 신용카드 ·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